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4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(생 략)	**제34조(이익분배)**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(현행과 같음)
제40조(보수) ①·②(생 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(생 략) 2. C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(생 략)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0.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(생 략)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(생 략) 3. ~ 4. (생 략)	**제40조(보수)**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(현행과 같음) 2. C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(현행과 같음)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8.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(현행과 같음)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(현행과 같음) 3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Ce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(생 략)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(생 략)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(생 략) 6. ~ 13.(생 략)	5. Ce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(현행과 같음) **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**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(현행과 같음)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(현행과 같음) 6. ~ 13.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부 칙** **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**